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가. 제안이유

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우리 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, 자치법규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- 제1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2항”을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4항”으로 변경

2) 「행정절차법」 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예외 사항 반영 (안 제5조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, 입법예고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개정안 제1조(목적)에서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규정 인용 조문을 ‘제20조제2항’에서 ‘제20조제4항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정 내용은 기존과 변동이 없음.
- 개정안 제5조(입법예고 대상)은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에 합당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명확한 조문 정비로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